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봉양순 의원
나. 의안번호: 제1348호
다. 발의일자: 2023.10.16.
라. 회부일자: 2023.10.23.

2. 제 안 사 유

- 최근 예기치 못한 폭염, 수해,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하여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장만이 아니라,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까지 필요한 상황임.
- 따라서 관련 시책 수립·계획 시행·사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기본이념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2조제10호).
- 나. 에너지계획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8조제2항제4호).
- 다.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10조제1항제7호).
- 라. 포상 대상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5조제2항).
- 마. 에너지복지 사업에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
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7조제1항제4호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에너지법」,
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복지 관련 기본이념, 계획수립 및 시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2조제10호는 에너지 시책 수립에 관한 기본이념에 ‘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’을 추가하는 것이고, 안 제8조제4호와 안 제10조제7호는 서울시 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과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임.

안 제25조제2항은 에너지복지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, 안 제27조제4호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 범위에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며, 안 제29조는 에너지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규정을 규정하는 것임.

본 조례안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,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